

이천 부발역 에피트 중도금대출 안내장

대출대상	☐ 이천 부발역 에피트 아파트 및 오피스텔 수분양자 中 - 계약금 5% 및 10% 이상 납부한 분양계약자 중 소득증빙이 가능한 자 -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의 주택구입자금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고 농협 대출 대상자 기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		
대출금리	대출금리 COFIX금리(신잔액) 기준금리(6개월 변동) + 1.03% ※ 중도금 대출금리는 중도금 1회차 실행일 기준으로 기준금리가 확정되며 6개월 주기로 대출금리가 변동됩니다. ※ 입주지정개시일부터 이자납부의무는 고객에게 있습니다. (중도금대출이자 후불제 적용)		
대출한도	☐ 아파트/오피스텔 공급금액(발코니확장, 유상옵션금액 제외)의 60%이내(중도금1~6회차) (주택도시보증공사(HUG)의 보증서발급 범위 내) ※ 정부의 정책, 당행 주택자금대출 규정, 대출신청인의 신용상태에 따라 거절될 수 있습니다.		
대출기간	☐ 최초 대출 실행일로부터 2028년 09월까지 (35개월)		
상환방법	☐ 만기일시상환 (대출원금 만기 일시상환 / 대출이자 매 1개월 후취로 납부)		
부대비용	☐ 수입인지대금(50% 고객부담) : 75,000원 (자서완료 후 안내받는 농협 인지세납부계좌에 이체) ☐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(고객부담) : 보증금액의 연 0.13% (보증료 할인대상은 후면 참조) ☐ 중도상환수수료 : 면제		
대출서류접수	☐ 기간 : 2025년 09월 11일(목) [1일간] 09:00 ~ 16:00 ☐ 장소 : 경기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682-5 (이천 부발역 에피트 견본주택)		
비대면 입출금통장개설	☐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의 보증서 발급 시 보증료환급 및 자동이체계좌번호가 입력되어야 하므로 지역농협 입출금통장 계좌가 반드시 필요 합니다. 중도금대출 신청 전 개설 바랍니다. ☐ 기존 지역농협 입출금통장 계좌보유 고객은 별도의 신규개설 필요 없습니다. (거래정지, 사고등록계좌 및 농협은행<농협중앙회>계좌만 보유하신 경우 신규개설 바랍니다.) ☐ 대포통장 명의인,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자는 계좌개설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 ☐ 비대면입출금통장 개설 진행이 어렵거나, 지역농협 거래가 없는 고객정보 최초 등록자는 거주지 근처 지역농협 방문하여 한도제한계좌 개설 바랍니다.		
	구분	내용	
	가입매체	■ 스마트뱅킹, 콕뱅크	
	이용시간	■ 평일/주말/공휴일 00:30 ~ 24:00	
	가입경로	스마트뱅킹	요구불
콕뱅크		요구불	■ 금융상품 >가입상품(입출금)선택 >상품판매영업점 선택 >MY콕통장 또는 주머니(money)통장 가입하기 ■ 전체메뉴 >금융상품 >예·적금 > 가입상품 선택 >상품판매영업점 선택 >가입하기

제출서류

공통서류

- ① 분양계약서 원본(반드시 지참) 및 계약금(5% 및 10%) 납부영수증(혹은 입금영수증)
- ② 신분증(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. 단, 모바일 신분증 불가), 인감도장
- ③ 주민등록등본(주민등록번호 및 관계 모두 표시)
 - 배우자와 별도 세대 구성 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도 필요
- ④ 주민등록초본(주소변동사항, 인적사항변동내역 포함) 본인, 배우자, 등본 상 세대원 모두 발급
- ⑤ 가족관계증명서(상세, 주민등록번호표시)
- 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전체내역, 금융기관제출용) 본인, 배우자
- ⑦ 인감증명서(본인발급용)
 - 분양계약서상 서명날인 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(용도에 '중도금대출용' 기재)
- ⑧ 국세납납증명서 및 지방세납납증명서, (국세)납부내역증명(2022년도 ~ 현재까지)

※ 모든 서류는 **2025년 09월 8일 이후 (8일 포함)** 발급분만 인정

※ 공동명의자의 경우 공통서류 각각준비

※ 유효기간 만료시 추가적으로 자료 요청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※ 심사 진행에 따라 추가 자료가 제출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소득증빙서류

급여소득자	☐ 재직증명서 ☐ 최근 2개년도의 소득금액증명원 (근로소득자용) 또는 최근 2개년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(반드시 직인날인) ☐ 단기재직자(1년 이내 근무)의 경우 월급여명세표(3개월분, 직인날인) 또는 급여통장 급여이체 거래내역서 첨부하여 소득 증빙
사업소득자	☐ 사업자등록증 ☐ 최근 2개년도의 소득금액증명원 (종합소득세신고자용) 또는 최근 2개년도의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☐ 신규사업자로 서류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 기타소득자 서류 준비
보험모집인 등 프리랜서	☐ 위촉계약서 등 ☐ 최근 2개년도의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최근 2개년도의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
연금소득자	☐ 최근 1년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 (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) ☐ 연금증서 상 연금수령액 미표기 시 통장거래내역서 제출
기타소득자 (무소득자 포함)	☐ 기타소득자(무소득자)는 세무서의 소득세 신고 사실이 없다는 사실증명원 반드시 제출 + ☐ 사실증명원 발급 후 아래 ㉠,㉡,㉢ 중 증빙 가능한 자료 함께 제출 ㉠ 최근 1년의 건강·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☞ 지역가입자 지역세대주만 인정, 미납금액 없어야 함. ㉡ 최근 1년의 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☞ 공단 발급분, 미납금액 없어야 함. ㉢ 최근년도 연말정산용 카드사용금액확인서(홈택스 발급) ※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인피부양자인 경우 사실증명원 생략가능

담당영업점

금융기관			담당자	문의전화
101	춘천농협	본점	홍춘구	033-269-5224
	북광주농협	본점	정진왕	062-571-0481
	춘천농협	퇴계지점	임제현	033-253-1428
102	대전축산농협	동서로지점	유홍균	042-621-1555
	광주비아농협	본점	김준석	062-953-9085
	광주비아농협	비아지점	김종혁	062-962-1010
103	온양농협	본점	황근하	041-539-7539
	김천축산농협	본점	김영진	054-420-0024
104	송정농협	원동지점	나성호	062-941-8428
	지도농협	본점	김세원	031-974-7591
105	목포농협	본점	김진호	061-285-7750
	대전농협	본점	김요한	041-935-0144
	서울서남부농협	난곡지점	정혁	02-855-8850
106	전주농협	본점	김지윤	063-239-4491
	인천원예농협	부평시장지점	이종민	032-519-3191
	평동농협	본점	강명준	062-949-2200
107	광주농협	본점	박동준	062-250-5124
	제천단양축산농협	장락지점	선정훈	043-640-3271

※ 취급농협은 배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

※ 상담농협과 취급농협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유의사항

- 대출 접수기간 내 반드시 신청 부탁드립니다.
- 대출신청인이 신용관리대상자이거나 당 행의 신용평가 결과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, 대출한도는 신청인의 소득, 부채, 신용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- 중도금대출기간 이내라도 대출신청인에게 연체정보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중도금대출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.
- 정부정책, 금융시장 환경변화 및 신청인의 신용평가 결과 등에 따라 대출자격, 대출한도 등 대출 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 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, 개인 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대출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이자납입 지연 시 대출이자율+연3%의 연체이자율이 적용되며, 최고 연18%의 연체이자 발생됩니다.
- 중도금대출은 신용등급별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지 않는 상품으로 금리인하요구권 대상 상품이 아닙니다.
- 향후 잔금대출 전환 시 DSR산정, DTI산정, 비거치 분할상환 등 규제가 적용되어 잔금대출이 거절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충분한 설명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.

보증료할인
자격기준

대상	자격요건	제출서류
저소득가구 (40%할인)	보증신청인(배우자 포함)의 연소득이 40백만원 이하인 자	☐ 본인 및 배우자 소득확인서류 - 소득금액증명원,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- 소득이 없는 경우 '사실증명원' 발급 ☐ 배우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다자녀가구 (40%할인)	보증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의 민법상 미성년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	☐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
장애인가구 (40%할인)	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, 보증신청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·비속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장애인증명서 발급대상 가구	☐ 주민등록등본 ☐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
고령자가구 (40%할인)	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만 65세 이상인 가구 (단, 보증신청인 본인이 단독세대주이면서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인 경우는 60%할인)	☐ 주민등록등본
노인부양가구 (40%할인)	보증신청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만65세 이상이면서, 보증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기간 동안 만65세 이상 고령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가구	☐ 주민등록등본
신혼부부 (40%할인)	보증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60백만원 이하면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(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)	☐ 혼인관계증명서 - 결혼예정자의 경우 청첩장, 예식장계약서 ☐ 본인 및 배우자 소득확인서류 - 소득금액증명원,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- 소득이 없는 경우 '사실증명원' 발급 ☐ 배우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한부모가구 (60%할인)	보증신청인이 『한부모가족지원법』에 따라 지원되는 가족으로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가구	☐ 한부모가족증명서
다문화가족 (40%할인)	『다문화가족지원법』 제2조 제1호에 의거 보증신청인과 배우자로 이루어진 가구로, -보증신청인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-보증신청인의 배우자가 귀화로 국적취득자 -배우자 있는 보증신청인이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	☐ 외국인등록증 사본 -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(출입국관리사무소) ☐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
국가유공자 가구 (40%할인)	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, 보증신청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·비속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국가유공자거나 국가유공자의 선순위 유족인 경우로 확인원을 통해 유공자 본인 혹은 수권자임을 확인 받은 가구	☐ 각 대상자별 (유족)확인원 - 국가유공자(유족)확인원 - 특수임무유공자(유족)확인원 - 독립유공자(유족)확인원 - 고엽제법적용대상(유족)확인원 - 5.18민주유공자(유족)확인원 - 지원대상자(유족)확인원 - 보훈보상대상자(유족)확인원
의사상자가구 (40%할인)	피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, 보증신청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·비속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『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』에 의거하여 대상자에 해당하는 가구	☐ 의사자(유족)증 사본 또는 의사자 증서 ☐ 의상자(유족)증 사본 또는 의상자 증서
모범납세자 (10%할인)		☐ 모범납세자 증명서 - 우대기간 이내, 1개월 내 발급분 - 산업훈장, 산업표창, 대통령표창, 국무총리표창, 기획재정부장관표창, 국세청장표창에 한함